

의안번호	2201581
의 퇴 인	이강일의원
회 답 일	2024.09.04.
추계번호	24D1879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 3(사건배당 기준위원회)	배당 및 재배당의 기준 및 우선순위를 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둠(제1항) 사건배당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 위원은 일반검사를 위원의 1/2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일반검사 중 여 성을 1/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 중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급 검사 대표, 검사 이 외에 검찰공무원 대표,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됨 (제4항) 사건배당기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 로 정함(제8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조의3(사건배당기준위원 회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사건배당기준위원회 구성 시,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평균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 존재
 - 규정에 따르면, 위원회의 구성은 13명의 위원 중 일반검사가 1/2 이상이

되도록 해야하고 일반검사 중 여성을 1/2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, 일반검사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 및 외부위원은 0~6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

-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¹⁾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회당 15~20만원 수준임
- 다만, 개정안은 사건배당기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시기나 빈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

1)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하고,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함